

2010년도 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9.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0년도 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필요성

- 내수경기 침체 및 경기진작을 위한 조기집행 등으로 세입은 감소한 반면(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78억원),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및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일시적 재정수요 증가 등의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원활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함

○ 발행규모

계	-----	90억원
└ 지역개발기금	-----	75억원
└ 금융기관	-----	15억원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 (지방채의 발행대상)

-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10 2회추경 자원확보를 위한』

2010 지방채 발행계획안

1. 필요성

-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축소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확대 및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일시적 재정수요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원활한 재정운용을 하고자함.

2. 발행규모

계	-----	90억원
지역개발기금	-----	75억원(금리3~4%)
금융기관	-----	15억원(금리4.3%)

3. 사용목적

-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이자수입(20억원), 순세계잉여금(78억) 감소
→ 총 98억원의 세입결손 충당

4. 지방채 현황

계	-----	326억원
금회발행	-----	90억원
2010.8월이전	-----	236억원

5. 향후 지방채 상환대책

계	-----	326억원
2010년도하반기	-----	3억원
2011년도	-----	92억원
2012년도	-----	6억원
2013년도	-----	5억원
2014년도이후	-----	220억원

※ 연도별 지방채 상환 계획 : 첨부1